

불교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원칙: 부채와 자본을 중심으로

윤 성 식*

< 목 차 >

- | | |
|-------------------|------------------------|
| I. 序論 | III. 收入, 支出, 利益에 대한 原則 |
| II. 負債와 資本에 대한 原則 | 1. 收入과 支出의 中道 |
| 1. 負債調達 | 2. 收入의 安定과 增加: 職業과 事業 |
| 2. 資本調達 | 3. 支出의 內譯과 性格 |
| 3. 資本蓄積 | 4. 税金 |
| 4. 資本保存과 生産力의 維持 | IV. 利子收入에 관한 原則 |
| | V. 結論 |
-

<한글요약>

초기불교에 나타난 부채와 자본에 관한 사상은 자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와 利子를 허용하지 않았던 기독교에 비교하여 훨씬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이다. 불교는 금융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사업다각화와 누진세제도를 권장하였으며 성과급을 가미한 배분을 시행하였다. 사람들의 인식과는 반대로 불교는 재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생활의 안정을 가정과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불교는 오늘날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와 매우 유사하지만 모든 점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보시와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권장한다. 비록 불교가 오늘날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연성과 적응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교의 독특한 재정과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갈등과 고통의 해결에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 불교경제학, 불교재정, 불교회계, 불교경영학, 부채와 자본.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序論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대부분 부채와 자본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사회주의경제는 資本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정적 실체로 규정하였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부채에 대한 이자를 불허함으로써 금융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칼빈이 이자를 허용한 뒤에도 은행설립은 한참을 기다려야했다. 2,500년 전에 나타난 불교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 그리고 사회주의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불교는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혁신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카스트 제도를 부인한다든지,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다든지, 기존의 종교와 사상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한 것 등이다. 불교는 당시 새롭게 형성된 신흥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측면과 경제논리의 타당한 부분을 수용하면서 독특한 불교경제학적, 경영학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재정과 회계사상을 사전과 목록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경제와 경영에 관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교에서 부채와 자본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는가를 먼저 밝혀내야 향후 불교의 현대적 해석과 불교적 관점에서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II. 負債와 資本에 대한 原則

1. 負債調達

부채란 경제적 편익의 미래 희생인데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로 인해서 미래에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¹⁾. 부채와 자본은 모두 자산에 대한 권리(equity)를 의미한다. 부채는 외부에 대한 의무이고, 자본은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²⁾.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성장과 개발을 위해 저축을 동원하여 투자대안에 배분하는 금융시스템이 있다³⁾. 일반적으로 사람

1) Emilio Barucci, *Financial Markets Theory*(New York: Springer, 2003), pp.334~336, 338.

2) Robert R. Milroy and Robert E. Walden,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0), p.3.

들은 부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뛰어난 기업능력이고 가장 신용이 높은 기업은 100% 부채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⁴⁾. 만약 불교가 기독교처럼 이자를 금지했다면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경제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불교는 이자를 죄악시 했던 기독교와는 달리 이자를 허용하지만, 분수를 넘는 부채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다⁵⁾. 불교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채와 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에 이르는 길의 하나가 부채가 없는 것이라고 설함으로서 부채는 행복에 이르는 인간의 자유에 장애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⁶⁾. 불교는 부채와 이자뿐만 아니라 재물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을 축복이라고 보고 있으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설하고 있다. 중아함경에 의하면 “만약 옷을 축적하여 선법이 증대하고 악법이 쇠퇴한다면 나는 그런 옷을 축적해도 좋다고 설한다. 옷뿐만이 아닌 음식, 도구, 주택, 촌락 등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설한다⁷⁾.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2. 資本調達

자본주채이론(proprietary theory)은 소유자와 기업은 사실상 동일하며 자산, 부채, 소유자지분은 기업이 아니라 소유자에 소속한다는 이론이다⁸⁾. 기업실체이론(entity theory)은 기업과 소유자는 별개이며 자산은 기업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부채와 자본제공자는 자산에 대한 투자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주와 채권자는 동일하다⁹⁾. 물론 주주는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익의 배분이나 소유자지분에 관한

3) Gerard Caprio, Jr, et al., *Financial Reform*, (Cambridge: *Financial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15.

4) Emilio Barucci, *Financial Markets Theory*(New York: Springer, 2003), pp.334~336.

5) 『中阿含經』 권29, 『大品』, 『貧窮經』(『대정장』1, p.614중). “世中有欲人 舉貸財物是大苦 世中有欲人 舉貸長息是大苦 世中有欲人 財主責索是大苦 世中有欲人 財主數往至彼求索是大苦 世中有欲人 爲財主收縛是大苦.”

6) Satha-Anand, Suwanna, *Ethics of Wealth: Buddhist Economics for Peace*, Chanju Mun, ed., *Buddhism and Peace: Theory and Practice*(Honolulu: Blue Pine, 2006), p.260.

7) 정기문, 2002, p. 10이 다음 문헌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정각 (2001), 『한국 佛敎 수행자의 새로운 모색: 인식전환을 위한 담론』, 『佛敎평론』, 여름.

8) Harry I. Wolk, et al.,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6th ed.,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4), p.143.

9) Richard G. Schroeder, et al., *Accounting Theory and Analysis*(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1), pp.444~445.

한 두 이론은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고 재무보고만이 차이가 날 뿐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론은 자본의 소유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부채와 소유자의 지분(equity)을 자본(capital)이라고도 하는데¹¹) 이럴 경우 자본이라는 용어는 조달된 자본, 즉 사용가능한 자산의 총액을 의미한다. 승가와 같은 비영리조직에게는 자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순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승가의 경우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시주로부터 얻는 시주물이다. 경전에는 토지나 집 등은 물론 과일밭까지 받은 기록이 있다¹²). 승가에 제공하는 시여물은 현금의 형태라기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부채의 조달에 의해 승가를 운영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와 이자에 관한 경전규정은 오직 재가자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3. 資本蓄積

자본이란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말하며 순자산이라고도 한다¹³). 자본이란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⁴). 경제학에서 자본이란 생산의 요소로서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을 말하지만 회계학이나 재무관리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가치(net worth)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¹⁵).

경전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여 자본을 축적하라고 권하고 있다. 기업의 자본 축적은 개인의 저축에 해당하는데 불교에서는 근면을 자본축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¹⁶). ‘선생경’에서는 벌이 꿀을 채집하듯이 일한다면 재화는 축적되어 마치 개미똥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설한다¹⁷). 자이나교에서는 재물을

10) Harry I. Wolk, et al.,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6th ed.,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4), pp.143~144.

11) Kenneth S. Most, *Accounting Theory*, 2nd ed., (Columbus, Ohio: Grid Publishing Inc., 1982), p.361.

12) 『四分律』 권43, 『藥捷度』(『대정장』22, p.875상). “爾時 衆僧得果園 佛言聽受…”

13) Harry I. Wolk, et al.,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6th ed.,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4), p.345.

14) Eldon S. Hendriksen and Michael F. Van Breda, *Accounting Theory*, 5th ed., (Burr Ridge, Ill: Irwin, 1992), p.356.

15) Kenneth S. Most, *Accounting Theory*, 2nd ed., (Columbus, Ohio: Grid Publishing Inc., 1982), p.207.

16) 『別譯雜阿含經』 권12, 『(二三一)경』(『대정장』2, p.458중). “若能勤作者 斯業勝聚斂 … 能教第一財.”

17) 미야사카 유쇼, 『佛敎에서 본 經濟思想』(서울: 여래, 1991), p.36.

열심히 모으되 일정 한도를 넘으면 안 되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되 이타적인 보시를 하면 된다¹⁸⁾. 또한 잘 가르치는 것이 첫째가는 재물이라는 표현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갈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는 보살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영농공업(營農工業), 상우공업(商佑工業: 상업), 사왕공업(事王工業: 정치학), 서산(書算: 수리학), 계탁(計度: 산수), 수인공업(數印工業: 경리), 점상공업(占相工業: 점술), 주술공업(呪術工業), 영조공업(營造工業: 경영학), 생성공업(生成工業: 축산업), 방나공업(防那工業: 방직업), 화합공업(化合工業: 재판, 법률학), 성숙공업(成熟工業), 음악공업(音樂工業) 등을 들고 있다¹⁹⁾.

재가자에게는 저축이 미덕이지만 출가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구들의 재산소유는 허용하지만 재산축적은 집착을 낳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²⁰⁾. 축적을 허용하면 축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탐욕이 발생한다. 그릇의 경우 16개를 넘으면 쌓아두는 것이며 걸식에서 음식이 남아도 내일을 위해 비축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그날 받아서 그날에 먹고 내일의 생활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²¹⁾. 또한 불필요한 옷의 축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²²⁾. 필요하기도 전에 물건을 구하는 것은 만사에 대비하는 준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출가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탐욕이라고 생각하여 금지하고 있다²³⁾. 비구는 가진 것을 써야 하는데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다²⁴⁾.

출가자가 금, 은 따위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²⁵⁾. 재가자의 경우에도 보물, 각종 물건, 부동산, 가축, 종 등을 불필요하게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²⁶⁾. 만약 어떤 물건을 축적할 필요가 생길 때는 탐욕을 억제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淨施라는 제도는 물건을 축적하면서 탐욕을 억제할

18) 조병찬, 『佛敎와 經濟理念』, 김용정, 佛敎와 現代思想(서울: 동화출판공사, 1982), p.210.

19) 홍성민, 『禪과 經濟』, 선학회 월례발표회, 2000년 11월 18일, p. 12.

20) 『增壹阿含經』 권41, 『馬王品』(『대정장』2, p.771중). “若有比丘成就九法者 於現法中不得長大云何爲九 與惡知識從事親近 非事恒喜遊行 恒抱長患 好畜財貨 貪著衣鉢 … 設有比丘能成就九者 便有所成辦 … 亦復不多畜諸財寶 不貪著衣鉢.”

21) 히라카와 아키라, 『比丘戒의 연구 II』, 석해능 역(서울: 민족사, 2004), pp.610~611.

22) 히라카와 아키라, 상계서, pp.545~546.

23) 『四分律』 권10, 『三十捨墮法』(『대정장』22, p.630상). “若比丘 春殘一月在 當求雨浴衣 半月應用浴 若比丘過一月前 求雨浴衣 過半月前用浴 尼薩耆波逸提 … 此某甲比丘 過一月前 求雨浴衣 過半月前用 犯捨墮.”

24) 『四分律』 권1, 『四波羅夷法』(『대정장』22, p.573상). “以無數方便訶責 … 云何檀尼迦 王不與材而取 … 當取取者當用.”

25) 『雜阿含經』 권32, 『(九一一)경』(『대정장』2, p.228중). “若沙門釋子 自爲受畜金銀珍寶清淨者 五欲功德悉應清淨 … 諸比丘 汝等從今日 須木索木·須草索草·須車索車·須作人索作人 慎勿爲己受取金銀種種寶物.”

26) 『佛說長阿含經』 권13, 『阿摩晝經』(『대정장』1, p.83하). “出家修道 … 金銀七寶不取不用 不娶妻妾 不畜奴婢·象馬·車牛·雞犬·豬羊·田宅·園觀 … 量腹而食無所藏積 度身而衣趣足而已.”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비구는 3依를 한 벌로 소유하지만 여분의 옷을 받으면 淨施하여 보관한다²⁷⁾. 淨施하여 보관하면 자기 옷이 손상되거나 분실 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창고에 저장한 셈이 된다.

무소유는 무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며, 실체적인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소유도 의미가 없다²⁸⁾. 무소유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불교의 五戒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바라문과 자이나교에 있는 금기사항과 같은데 소유하지 말 것이라는 바라문과 자이나교의 무소유조항을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항으로 대체했다고 한다²⁹⁾. 불교는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와 달리 무소유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는 불필요한 축적에서 다툼이 생기고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결국 4계급도 생겼다고 본다. 어떤 게으른 중생이 아침에 먹을 것을 아침에 취하고 저녁에 먹을 것을 저녁에 취하는 것보다 하루 먹을 것을 한꺼번에 취하자고 생각하여 비축해 놓았는데 친구가 이를 알고 3일분을 저축하였으며 또 다른 중생이 5일분을 저축하게 되고 중생들이 서로 다투어 저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⁰⁾. 불교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축적으로 간주했지만 필요한 것만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4. 資本保存과 生産力의 維持

경전에서는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는 1/4은 의식에 사용하고, 2/4는 사업에 사용하며, 1/4은 저축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저축은 바로 자본의 축적에 해당한다³¹⁾. 또한 왕이 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하고 관리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³²⁾. 윤리적인 자본축적을 강조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에는 법다이 재물을 모아야 하지만 방편과 꾀가 있어야 재물을 잘 지킨다고 설하고 있다³³⁾. 이는 자본의 보존과 생산력의 유지에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27) 히라카와 아키라, 상게서, p.79.

28) 미야사카 유쇼, 前掲書, p. 88.

29) 조병찬, 前掲書, p. 210.

30) 『佛說長阿含經』 권6, 「小緣經」(『대정장』1, p.38상). “汝欲取者 自可隨意 彼人復自念言 此人點慧 能先儲積 我今亦欲積糧 以供三日 其人即儲三日餘糧 有餘衆生復來語言 可共取米 答言 吾已先積三日餘糧 汝欲取者可往自取 彼人復念 此人點慧 先積餘糧 以供三日 吾當效彼 積糧以供五日 即便往取時 彼衆生競儲積已 粳米荒穢 轉生糠糲.”

31) 『雜阿含經』 권48, 「(一二八三)경」(『대정장』2, p.353상). “始學功巧業 方便集財物 得彼財物已 當應作四分 一分自食用 二分營生業 餘一分藏密.”

32) 『增壹阿含經』 권42, 「結禁品」(『대정장』2, p.778중). “以法取物 不以非法 … 便得久存 無奈之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생산력 혹은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이란 현재 생산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의 재화와 서비스를 향후에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⁴). 자본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미래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공양을 받을 때도 주는 사람의 자본력이 잠식되지 않을 정도로 받아야 한다. 시주의 생산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의식주 모두에 걸쳐 존재하는데³⁵) 예를 들어 걸식할 때 한 집에만 가면 안 된다³⁶). 보시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에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며 이는 자본력을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일 것이다³⁷). 또한 시주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고가의 사치품을 공양 받아서는 안 된다³⁸). 보시를 줄 때나 받을 때나 보시를 주는 사람의 생산력을 훼손하여 미래의 보시능력을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므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自然資本(자연재)은 고갈되지 않도록 그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³⁹). 예를 들어 좋은 나무는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자본재인데 그것을 베면 목재라는 소비재가 되어 버리므로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⁴⁰).

33) 『別譯雜阿含』 권5, 「(九一)경」, 『대정장』2, p.405상. “如法聚財 設有方計 不爲王賊水火之所劫奪 怨憎之處悉不得侵 不生惡子 是名守護.”

34) Ahmed Belkaoui, *Accounting Theory*(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1), p.146.

35) 위자야라타나, 모한, 『比丘尼 승가: 比丘尼 승가의 탄생과 변화』, 운영철 역(서울: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p.148.

36) 『四分律』 권19, 「九十單提法」, 『대정장』22, p.696하). “若諸比丘至家者 常與飯食及諸供養故 令其貧窮衣食乏盡 比居諸人皆作此言 彼家先大富多財饒寶 從供養沙門釋子已來 財物竭盡貧窮乃爾 如是恭敬供養乃反得貧弊 爾時諸比丘聞 其中有少欲知足行頭陀樂學戒知慚愧者 嫌責諸比丘言 汝等云何 數至居士家 受飲食供養而不知足 使彼居士財物竭盡乃爾耶 時諸比丘往世尊所 頭面禮足在一面坐 以此因緣具白世尊 世尊爾時以此因緣集比丘僧 呵責諸比丘言 汝所爲非 非威儀非沙門法非淨行非隨順行 所不應爲 汝等云何 數至居士家受供養飲食 乃令彼家貧窮如是 以無數方便呵責諸比丘已告諸比丘 自今已去聽僧與彼居士作學家白二羯磨 作如是與 衆中當差堪能羯磨者 如上當作如是白.”

37) 『增壹阿含經』 권21, 「苦樂品」, 『대정장』2, p.655상). “云何人先苦而後樂 … 若復所有之遺餘 與人等分 彼身壞命終 生善處 若生人中 多財饒寶 無所乏短 是謂此人先苦而後樂.”

38) 『四分律』 권19, 「九十單提法」, 『대정장』22, p.693하). “時有信樂工師 爲比丘作骨牙角針筒以是故 令此工師廢家事業 財物竭盡無復衣食時 諸世人皆作此言 此工師未供養沙門釋子時 多財饒寶 自供養沙門釋子已來 居家貧賈無所食瞰 所以供養者 望得其福 而反得殃 … 云何諸比丘 使工師作骨牙角針筒財物竭盡 世尊以無數方便 呵責諸比丘已.”

39) 슈마허, E. F., 『佛敎經濟學』, 김정우 역(서울: 대원정사, 1987), p.23.

40) 『四分律』 권3, 「十三僧殘法」, 『대정장』22, p.586중). “有如是好樹 多人往返象馬車乘 止息其下 云何斫伐作大屋 汝不應斫伐神樹…”

III. 收入, 支出, 利益에 대한 原則

1. 收入과 支出의 中道

수익(revenues)은 자산의 유입, 자산의 가치증대, 부채의 감소, 혹은 이들의 결합, 예를 들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¹⁾. 수익은 자본의 증가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비용은 자본의 감소가 될 것이다⁴²⁾. 비용(expenses)은 자산의 유출, 자산의 사용, 부채의 발생, 혹은 이들의 결합, 예를 들어 자산의 유출과 부채의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⁴³⁾.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한 액수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자본의 증가에 해당한다. 수익은 총자산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용은 총부채에 대한 이자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익은 투자한 액수 즉 자본에 대한 이자로 생각할 수 있다⁴⁴⁾.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개념이므로 현금주의 회계개념인 수입, 지출과 다르다. 초기불교경전에 나타난 수입, 지출이라는 용어는 현금주의 회계 용어지만 여기서는 수익, 비용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불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모순처럼 보인다⁴⁵⁾. 그러나 수입이 많아도 보시하거나 불필요한 축적을 삼가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입과 지출이 알맞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단기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모순은 해결된다.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같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아가서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수입과 지출이 같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재무관리에서 이익을 말할 때는 장기적인 개념이지 단기적 개념이 아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자본을 축적했

41) Harry I. Wolk, et al.,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6th ed.,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4), p.373.

42) Eldon S. Hendriksen and Michael F. Van Breda, *Accounting Theory*, 5th ed., (Burr Ridge, Ill: Irwin, 1992), p.25.

43) Harry I. Wolk, et al.,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6th ed.,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4), p.377.

44) Vernon Kam, *Accounting Theory*(Hoboken, N.J.: John Wiley & Sons, 1990), p.191.

45) 『雜阿含經』 권4, 「(九一)경」(『대정장』2, p.23중). “善男子所有錢財出內稱量 周圓掌護 不令多入少出也·多出少入也 如執秤者 少則增之 多則減之 知平而捨 如是 善男子稱量財物 等入等出 莫令入多出少·出多入少 若善男子無有錢財而廣散用 以此生活 人皆名爲優曇鉢果 無有種子 愚癡貪欲 不顧其後.”

지만 나중에 보시하거나 재투자하면 결국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것이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더라도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는데 부당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종업원의 복지나 재투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⁴⁶⁾. 이익금의 일부분을 재투자하는 것도 경전에서 말하는 지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조건 지출이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치하지도 않고 검박하지도 않고 중도를 취해야 하는데⁴⁷⁾ 경제생활에서 과잉(excess)과 부족(inadequacy)의 중간인 충분성(sufficiency)이 사회통합과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과 유사하다⁴⁸⁾. 부처님은 저축을 장려하였지만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배척하였다⁴⁹⁾. 보시도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의 지나친 극소화는 보시의 극소화를 의미한다⁵⁰⁾. 세존은 또한 사치품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물건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으면서 막상 중요한 것은 아끼는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고 있다⁵¹⁾.

2. 收入의 安定과 增加: 職業과 事業

부처님은 경제생활의 안정이 가족의 건전한 도덕생활을 유지하고 넓게는 사회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⁵²⁾. 불교는 재가자의 사업중사는 허용하지만 출가자의 직업과 사업은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은 이익을 얻는 것, 지키는 것, 망보는 것을 말한다⁵³⁾. 사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절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5전어치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 한

46) 『雜阿含經』 권4, 「(九一)경」(『대정장』2, p.23중). “或有善男子財物豐多 不能食用 傍人皆言是愚癡人如餓死狗 是故 善男子所有錢財能自稱量 等入等出 是名正命具足.”

47) 『別譯雜阿含經』 권5, 「(九一)경」(『대정장』2, p.405상). “宜自壽量 不奢不儉 是名正理養命.”

48) Satha-Anand, Suwanna, *Ethics of Wealth: Buddhist Economics for Peace*, Chanju Mun, ed., *Buddhism and Peace: Theory and Practice*(Honolulu: Blue Pine, 2006), p.254.

49) 홍성민, 전제서, p.5.

50) 『別譯雜阿含經』 권3, 「(五九)경」(『대정장』2, p.393하). “有一長者 名摩訶南 其家巨富 多饒財寶 佛問王曰 云何大富 王白佛言 彼長者家 金銀珍寶 數千萬億 不可稱量 況復餘財 雖有財富 不能飲食 所可食者 雜糠麤澀 若作羹時 渾煮薑罷煮已 還取賣爲財用 所可衣者 唯著麤布 五總疏弊 以爲內衣 乘朽故車 連綴樹葉 以爲繖蓋 未曾見其施沙門婆羅門貧窮乞兒 若欲食時 要先閉門 恐諸沙門婆羅門等來從乞 佛言大王 如此之人 非善丈夫 何以故 得斯財富不能開意正直受樂 又復不能孝養供給妻子 亦不賜與奴婢僕使 又不時時施諸沙門婆羅門 亦復不求上業生天之報 譬如鹵地 有少汪水 以鹹苦故 無能飲者 乃至竭盡 … 雖豐財寶 都無利益 佛言大王 善丈夫者 得於財業 能自施用 正直受樂 亦能供養師長父母 及與妻子 并其眷屬 奴婢僕使 親友知識 乃至供養沙門婆羅門貧窮乞丐 悉能惠施 如斯善人 所得財寶 名爲上業 作快樂因生天之緣 此人聚財成就大善 譬如近城村邑聚落 有清冷池 … 一切衆人 皆得洗浴 并獲好飲 飛禽走獸 翱翔嬉樂.”

51) 『雜阿含經』 권48, 「(一二七九)경」(『대정장』2, p.352중). “求珠璫瓔珞 革屣履傘蓋 莊嚴自慳惜 是則墮負門.”

52) 오노신조, 『佛敎社會經濟學』, 박경준, 이영근 역(서울:佛敎시대사, 1992), p.80.

53) 『四分律』 권1, 「四波羅夷法」(『대정장』22, p.573하). “若同財業 若要若伺候 若守護 若邏要道.”

다⁵⁴). 이익을 내는 행위는 사업이지만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가자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四分律』에서는 5衆의 출가인과 더불어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며, ‘팔리율’에서도 淨人을 시켜서 무역하는 것을 승인하는데, 다만 값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즉 가격을 매기고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싸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익을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⁵⁵). 이익을 내기 위한, 즉 사업이 아니라면 교환 같은 경제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선생경’에서는 먼저 기술을 배운 후에 재물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⁵⁶) 기예가 재물획득의 필요조건으로 서술되고 있다⁵⁷). 또한 불교는 주택임대사업을 여섯 가지 직업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⁵⁸).

3. 支出의 內譯과 性格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첫째 부모, 둘째 처자, 친척, 권속, 중, 품꾼, 하인, 셋째 수행하는 사문과 바라문에게 지출해야 한다⁵⁹). 그러나 이상 세 종류의 사람에게 지출하기에 앞서 즐거이 자신을 위하여 써야한다⁶⁰). 불교가 보시를 강조하지만 자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뒤에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다.

수입은 음식에 일부 사용하고, 농사에 일부 사용하며, 일부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⁶¹). 또 일부는 농사꾼이

54) 『四分律』 권1, 『四波羅夷法』(『대정장』22, p.575상). “同財業者 同事業得財物當共 以盜心取直五錢 若過五錢波羅夷 方便偷蘭遮.”

55) 히라카와 아키라, 전개서, p.397.

56) 미야사카 유쇼, 전개서, p.37.

57) 『中阿含經』 권33, 『大品』, 『善生經』(『대정장』1, p.642상). “初當學技術 於後求財物.”

58) 『雜阿含經』 권48, 『(一二八三)경』(『대정장』2, p.353중). “營生之業者 田種行商賈 牧羊牛與息邸舍以求利 造屋舍床臥 六種資生具 方便修眾具 安樂以存世 如是善修業 點慧以求財 財寶隨順生 如衆流歸海 如是財饒益 如蜂集衆味 晝夜財增長 猶如蟻積堆.”

59) 『雜阿含經』 권4, 『(九三)경』(『대정장』2, p.24하). “謂善男子方便得財 手足勤苦 如法所得 供養父母 令得安樂 是名根本火 … 謂善男子方便得財 手足勤苦 如法所得 供給妻子·宗親·眷屬·僕使·傭客 隨時給與 恭敬施安 是名家火 … 善男子隨時恭敬 尊重供養 施其安樂 謂善男子方便得財 手足勤勞 如法所得 奉事供養諸沙門·婆羅門 善能調伏貪·恚·癡者 … 是名田火.”

60) 『雜阿含經』 권46, 『(一二三二)경』(『대정장』2, p.337중). “有善男子得勝財利 快樂受用 供養父母 供給妻子·宗親·眷屬 給恤僕使 施諸知識 時時供養沙門·婆羅門 種勝福田 崇向勝處 未來生天 得勝錢財 能廣受用 倍收大利 … 聚落·城郭邊有池水 澄淨清涼 樹林蔭覆 令人受樂 多衆受用 乃至禽獸 如是 善男子得勝妙財 自供快樂 供養父母 乃至種勝福田 廣收大利.”

61) 『中阿含經』 권33, 『大品』, 『善生經』(『대정장』1, p.642상). “初當學技術 於後求財物 後求財物已分別作四分 一分作飲食 一分作田業 一分舉藏置 急時赴所須 耕作商人給 一分出息利 第五爲

나 장사꾼에게 주어 이자를 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용자를 하라는 것이며 금융사업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4분법이라고 한다. 재가자에게 이자를 허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가자의 경우에도 허용한 계율이 있다. ‘근본유부율’에서는 三寶를 위해서라면 無盡物을 회전하여 이익을 추구해도 좋다고 하고 있다⁶²⁾.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일정한 위험수준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⁶³⁾. 경전에서 농사, 장사, 목축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마치 대형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연상하게 한다⁶⁴⁾.

초기경전에는 생산에 관한 언급보다 분배에 관한 언급이 훨씬 많은데 원시 불교시대에는 천연생산물의 혜택이 많았고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는 생산물의 균등분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⁶⁵⁾. 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시 또는 시여(施與)도 종족민의 공동생산물인 쌀 등의 분배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⁶⁶⁾. 승가는 슈레니라고 하는 중세의 길드와 같은 상공업자의 조합조직과 유사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균등분배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⁶⁷⁾.

승가에서는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⁶⁸⁾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비구가 물건을 남기고 죽었을 경우 간병하는 사람이 갖도록 허용하고 있다⁶⁹⁾. 조금 일하면 조금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도 실행되고 있는데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일해야 보상이 주어진다.⁷⁰⁾

取婦 第六作屋宅.”

62) 히라카와 아키라, 전계서, p.390.

63) Robert A. Haugen, *Modern Investment Theory*, fifth edition, Prentice Hall, 2001, pp.104; Frank J. Fabozzi, Harry M. Markowitz,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estment Management*, John Wiley & Sons, Inc., 2002, pp.15~42.

64) 『別譯雜阿含經』 권13, 「(二八一)경」(『대정장』2, p.471하). “先學衆技能 次集諸財寶 集財爲四分 一分供衣食 二分營作事 一分俟匱乏 種田是初業 商估是爲次 蕃息養牛群 羔牛并六畜 復有諸子息 各爲求妻婦 出女并姊妹 及六畜家法 調和得利樂 不和得苦惱 作事令終訖 終不中休廢 智者善思惟 深知於得失 善解作不作 財寶來趣己 如河歸大海.”

65) 미야사카 유쇼, 前掲書, p. 63.

66) 박경준, 『原始佛教의 사회, 경제사상 연구』(박사정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2), p. 139.

67) 미야사카 유쇼, 前掲書, p. 133.

68) 『四分律』 권43, 「卷藥捷度」(『대정장』22, p.875상). “佛言 若守僧伽藍民 若沙彌若優婆塞 彼守視人欲得分 佛言 應計食作價與直”.

69) 『四分律卷』 권41, 「衣捷度之」(『대정장』22, p.862상). “病者死 … 彼持亡比丘衣鉢坐具針筒來.”

70) 『四分律卷』 권41, 「衣捷度之」(『대정장』22, p.862중). “時有比丘小小瞻病 … 便取彼衣鉢 佛言 不應如是小小瞻病便取彼衣鉢 有五法看病人 不應取病人衣物 何等五 一不知病者可食不可食 可食而不與 不可食而與 二惡賤病人大小便唾吐 三無有慈愍心爲衣食故 四不能爲病人經理湯藥 乃至差若死 五不能爲病人說法令病者歡喜 己身於善法損減 有如是五法 不應取病人衣物.”

경전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공서열에 의한 보상이나 획일적인 보상이 아님을 의미한다⁷¹⁾. 또한 출신과 계급을 무시하고 오로지 능력과 성과에만 기초하여 보상을 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과 서열을 무시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물건이나 먹을 것에 있어서 제자가 和尚에게 먼저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⁷²⁾. 분배는 성과에 따라 하지만 승가 내에서 서열이나 수행의 정도에 따른 위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결국 성과급과 계급에 의한 분배를 병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 경전에 있는 것이다.

4. 税金

시장은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형평성이 결여되기 마련이고 소득재분배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여기에는 세금이 필요하다⁷³⁾.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는 法の 판결에 의존하거나 보험에 의존하거나 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法の 판결이란 예를 들어 공장자동화로 해고된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 법원이 화폐가치를 부과하거나 공해를 유발한 기업주에게 벌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⁷⁴⁾. 국가가 권리(rights)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이 필요하며 권리란 공공재와 같은 것이다⁷⁵⁾.

부처님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속인의 탈세행위를 비구가 돕는 것을 금하고 있다⁷⁶⁾. 스님들은 오늘날처럼 비과세였는데⁷⁷⁾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속인들의 탈세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승경전에는 “세금의 징수는 일정한 法을 따를 것이며 세율을 낮추고 빈궁한 자에게는 면세의

71) 『別譯雜阿含經』 권4, 「(六八)경」(『대정장』2, p.397하). “譬如有一人 驍勇有大力 兼善解射術 衆技悉備知 鬥戰須此人 當厚賜財寶 并與其爵賞 不擇其種姓 但錄其功勳 大王應如是.”

72) 『四分律』 권33, 「受戒捷度」(『대정장』22, p.801하). “有可食物授與和尚 僧中有別利養 當白和尚言 得如是如是物 是和尙分 彼當問和尚言 欲入村不 若言不入 當問言 從何處取食 若和尚言從某處取 當如敕往取…”

73) Richard W. Tresch, *Public Finance: A Normative Theory*(Plano, Texas: Business Publications, Inc., 1981), p.8.

74) Brian Abel-Smith and Kay Titmuss,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4), pp.75~101.

75) Stephen Holmes and Cass R. Sunstein, *The Cost of Rights: Why Liberty Depends on Taxes*(New York: W. W. Norton, 1999), p.48.

76) 『四分律』 권55, 「調部」(『대정장』22, p.976상). “時有比丘與賣糲人共行 彼語比丘言 長老 汝等度關不輸稅 今欲以此糲託長老度關 時比丘卽爲過之便疑 佛言汝以何心 答言以盜心 佛言 價直五錢過關 便波羅夷.”

77) 『四分律』 권1, 「四波羅夷法」(『대정장』22, p.574하). “不輸稅者 比丘無輸稅法…”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해져 있다⁷⁸⁾. 원래 세금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⁷⁹⁾. 불교에서는 조세의 기원에 대해서 도둑질이 시작되고 인간의 다툼이 시작되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王을 세우고 王을 세운 뒤에는 王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⁸⁰⁾.

IV. 利子收入에 관한 原則

사람들은 유형 무형의 대상물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려는 경향이 있고 타산적으로 계산할 때는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화폐를 기준으로 한 계산과 이해타산에서 인간의 탐욕은 더욱 강화되며 화폐는 결국 인간 탐욕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탐욕이 있어서 돈을 원하기도 하지만 마치 돈이 있기에 탐욕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은 탐욕을 촉발하고 탐욕의 원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화폐는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정 물건을 보시하면 그 물건의 소유와 소비에만 국한되지만 돈을 보시하는 경우 돈으로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욕망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탐욕이 증가한다. 부처님이 출가자에게 돈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돈을 만지는 것조차 금하고, 심지어 언급하는 것조차 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돈의 재료인 구리가 필요하다면 돈으로서의 형상을 파괴하여 사용해야 한다⁸¹⁾.

金, 銀 같은 귀금속은 언제나 즉시 돈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돈을 금한다면 金, 銀 같은 귀금속도 당연히 금해야 한다. 비구는 金, 銀, 혹은 돈을 손수 받아서도 안 되며⁸²⁾,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받도록 하여도 안 되고, 손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놓아 두고 받아라 하는 것을 승인 수령하여도 안 된다⁸³⁾. 심지어 ‘이 물건은 얼마인가’라고 묻는 것조차도 不淨問이라고 금하며 ‘나는 그대에게 7백원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不淨語’라고 금한다⁸⁴⁾. 그러

78) 박경준, 전제서, p.150.

79) Aman Khan and W. Bartley Hildreth, *Case Studies in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2nd ed., (New York : M. Dekker, 2003), p.227.

80) 『佛說長阿含經』 권22, 『世記經』, 『世本緣品』(『대정장』1, p.148하). “我等今者寧可立一平等主 善護人民 賞善罰惡 我等衆人各共減割以供給之 … 我等今欲立汝爲主 善護人民 賞善罰惡 當共減割以相供給.”

81) 『四分律』 권39, 『衣撻度』(『대정장』22, p.850상). “時有比丘在塚間 得鏹鉤刀鎌 畏慎不敢取白佛 佛言聽取畜 時有比丘 在塚間得錢自持來 比丘白佛 佛言不應取 彼比丘須銅白佛 佛言 打破壞相 然後得自持去.”

82) 『四分律』 권8, 『三十捨墮法』(『대정장』22, p.619상). “沙門釋子 不得捉金銀若錢…”

83) 사토 미츠오, 『律藏』, 최장식 역(서울: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4), p.125.

84) 히라카와 아키라, 『율장연구』, 박용길 역(서울: 토방, 1995), p.780.

나 僧伽藍과 寄宿處에서 보배나 보배의 莊飾具를 스스로 잡거나 사람을 시켜 잡되 보관하기 위해서 잡는 것은 상관없다⁸⁵). 金, 銀, 貨幣 등과 같이 소유가 금지된 것은 재가신자에게 주면 신자가 맡아 있다가 물건으로 바꾸어서 승가에 보시한다⁸⁶).

보시하는 사람이 물건으로 보시하려고 할 때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이미 탐욕과 계산, 그리고 이해타산이 개입하는 것이므로 금하고 있다⁸⁷). 예를 들어 집을 지을 재료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⁸⁸). 金, 銀의 교역을 금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구가 물자와 물자간의 교역을 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물론 출가간의 물물교환은 당연히 허용된다⁸⁹).

경전에서는 지나친 계산을 금하기 위해서 저울을 가지지 말고 대충 양을 판단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출가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재가자에게도 의미하는바가 크다⁹⁰). 지나치게 타산적인 행위는 계산에서 출발하고 이것이 결국 분별과 차별로 이어진다. 산수에 집착하는 것을 세속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가란 산수를 떠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⁹¹). 화폐가 인간을 탐욕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도 화폐의 계산 기능 때문이다. 화폐는 시장경제의 저울이고 화폐야 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산수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비구로서 계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瑜伽師地論에는 보살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서산(書算: 수리학)을 들고 있는데 비구와 재가자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폐는 교환경제의 수단이다. 화폐가 없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과 대상의 취득이 제한되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득대상의 화폐가치에 해당하는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취득대상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단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편리할 경우가 많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화폐경제시대에 돌

85) 이지관, 『남북전 6부 율장비교연구』(서울: 가산문고, 1996), p.254.

86) 히라카와 아키라, 『比丘戒의 연구 II』, 석해능 역(서울: 민족사, 2004), p.69.

87) 『四分律』 권8, 『三十捨墮法』(『대정장』22, p.618하). “時城內有一大臣 … 卽敕其婦 … 持此錢更市肉與跋難陀 … 跋難陀問言 … 若爲我故可與我錢不須肉 … 時跋難陀得此錢已 持寄市肆上而去 諸居士見皆共嫌之”

88) Wijayaratna, Mohan, *Buddhist Monastic Lif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78.

89) 사토 미즈오, 상계서, p.128.

90) 『四分律』 권43, 『藥捷度』(『대정장』22, p.876하). “時諸比丘得胡麻粳米得大豆小豆大麥小麥 自欲量 白佛 佛言 聽手抄量若鍵[金*咨]若鉢若小鉢量 卽以此器大小准以爲斛斗 時諸比丘得酥油蜜黑石蜜 欲稱量 白佛 佛言聽 刻木作銖兩如稱齊限四五兩 准以爲斤數.”

91) 『增壹阿舍經』 권42, 『結禁品』(『대정장』2, p.777하) “比丘復著算數 返道就俗 不習正法 … 必墮三惡趣 不生善處.”

입하였고 사람들은 화폐가 가진 마력을 공포의 눈으로 주시했을 것이며 부처님도 이를 깨달았을 것이다⁹²⁾. 부처님이 비구가 돈에 몸이 닿는 것조차 금할 정도로 청정함을 요구하는 것은 돈의 기능과 위력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귀금속인 金, 銀도 소유를 금하고 있지만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허용하고 있다. 金, 銀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화폐기능을 하는 金과 銀을 원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貨幣, 金, 銀의 소유를 금했다고 하기 보다는 貨幣 그 자체, 貨幣로 전환될 수 있는 金과 銀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貨幣, 金, 銀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몸을 위해서는 貨幣, 金, 銀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없다⁹³⁾.

보시의 경우에도 받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는 것보다 貨幣를 받아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貨幣의 이러한 특성과 이점 때문에 貨幣로 보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중에게 약값을 보시하면 대중은 그 돈으로 약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⁹⁴⁾. 스님들이 죽, 떡, 과일, 밥을 주어도 방에 머물지 않거든 방에 드는 돈을 주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⁹⁵⁾. 지금까지는 貨幣, 金, 銀의 소유를 금했다고 단순히 생각해왔으나 貨幣, 金, 銀 등이 제한된 목적 하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淨人을 통해서 金, 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자를 금지했는데 종교개혁으로 비로소 이자가 허용되어 금융자본이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칼빈은 고리대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부정적인 고리대금을 금하고 정당한 이자수취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은행 설립은 상당기간 동안 허용되지 않았다⁹⁶⁾. 기독교와는 달리 부처님은 이자와 금융사업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심지어 권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⁹⁷⁾. 물론 출가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저당을 잡고 빚

92) 미야사카 유쇼, 진게서, p.23.

93) 『四分律』 권8, 『卷三十捨墮法』(『대정장』22, p.619중). “比丘若爲作屋 故求材木竹草樹皮得受 不應自爲身受.”

94) 『四分律』 권42, 『藥捷度』(『대정장』22, p.869중). “時有居士作是念 云何作福供養衆僧 便成施藥 白佛 佛言聽布施衆僧藥錢 時有居士 新作房舍無道人住念言 云何供養衆僧 令諸比丘在此房住 白佛 佛言 聽在房中作粥 若復不住 復聽在房作種種餅及果 若故不住當與作飯食 若不住 聽與房錢.”

95) 『四分律』 권42, 『藥捷度』(『대정장』22, p.869중). “時有居士作是念 云何作福供養衆僧 便成施藥 白佛 佛言聽布施衆僧藥錢 時有居士 新作房舍無道人住念言 云何供養衆僧 令諸比丘在此房住 白佛 佛言 聽在房中作粥 若復不住 復聽在房作種種餅及果 若故不住當與作飯食 若不住 聽與房錢.”

96) 이은선, 『칼빈과 청교도의 經濟倫理』,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 제 6권(개혁신학과 經濟倫理), 한국개혁신학회, 한들출판사, 1999, pp.137~170.

97) 『中阿含經』 권33, 『大品』, 『善生經』(『대정장』1, p.642상). “初當學技術 於後求財物 後求財物已

을 주어서는 안 되며⁹⁸⁾ 근본유부율'에 의하면 비구가 이자를 취하는 것(出息)은 금지되어 있었다⁹⁹⁾. 원시불교나 대승불교에서 승원은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대부,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해왔으며 중세 인도의 금융사업은 이와 같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¹⁰⁰⁾. 한국불교에서도 契의 전신으로 알려진 寶는 처음에는 불교의 교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사원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체사업을 영위하는 식리적 기능을 가졌었는데, 그 후 전제국가의 일반적인 지배체제를 지지하는 속성인 고리성을 갖게 되었다¹⁰¹⁾.

이자를 계산할 때 단리방식은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지만 복리방식은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다. 경전에서는 비록 비유를 통해서지만, 복리이자계산방법과 유사한 증식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에 2전이고 사흘에는 2의 2승, 나흘에는 2의 3승, 닷새에는 2의 4승, 엿새에는 2의 5승으로 사실상 利子和 재산이 복리로 붙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¹⁰²⁾.

V. 結論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이자를 허용하고 복리이자까지 수용하고 있지만, 분수를 넘는 부채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는 달리 자본축적을 권장하고 있다. 저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는 불필요한 축적은 금하고 있으며 축적된 재물을 보시할 때는 자본력 즉 생산력을 훼손할 정도로 보시할 필요는 없다. 지출은 수입보다 작아야 하며 결국 수입과 지출은 적절해야 한다. 무조건 지출이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치하지도 않고 검박하지도 않고 中道를 취해야 하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쓴 뒤에 남는 것을 보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예비비를 설정하여야 한다. 승가에서는 균등배분이 원칙이나 성과급과 계급을 감안한 분배를 병행하였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있다. 출가자에게는 금, 은, 화폐를 받는 것은 물론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경전에서는 無盡物을 회전하여 이익

分別作四分 …耕作商人給 一分出息利.”

98) 『佛說長阿含經』 권14, 『梵動經』(『대정장』1, p.89상). “不執金銀 … 不以斗秤欺誑於人 亦不販賣券要斷當 亦不取受貲債橫生無端.”

99) 히라카와 아키라, 전계서, p.379.

100) 미야사카 유쇼, 전계서, p.31.

101) 홍성민, 전계서, p.18.

102) 『雜阿含經』 권41, 『(一一二一)경』(『대정장』2, p.297중). “譬人求利 日日增長 一日一錢 二日兩錢 三日四錢 四日八錢 五日十六錢 六日三十二錢 如是士夫日常增長 八日·九日乃至一月 錢財轉增廣耶 … 如是士夫錢財轉增 當得自然錢財增廣.”

을 추구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승원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면 불교의 부채와 자본에 관한 사상은 오늘날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와 매우 유사하지만 모든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시와 투자를 통한 수익과 비용의 일치를 설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재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생활의 안정을 가정과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불자로서는 재물로 인한 탐욕과 이로 인한 고통이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불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유연성과 적응성을 허용하면서도 불교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인의 경제, 경영에 관한 고민을 직접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후속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규명된 경전의 내용들을 기초로 21세기가 처한 실제 경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佛說長阿含經』(『대정장』1).
- 『中阿含經』(『대정장』1).
- 『雜阿含經』(『대정장』2).
- 『別譯雜阿含經』(『대정장』2).
- 『增壹阿含經』(『대정장』2).
- 『四分律』(『대정장』22).
- 노르베리-호지, 헬레나, 『세계화 經濟와 佛敎』, 녹색평론 제34호, 1997년 5-6월호.
- 목정배, 『佛敎倫理概說』(서울: 경서원, 1986).
- 미야사카 유쇼, 『佛敎에서 본 經濟思想』(서울: 여래, 1991).
- 박경준, 『佛敎社會經濟論』(서울: 동국대학교, 2004).
- _____, 『印度佛敎계율에 있어서의 노동문제-소승율장을 중심으로』, 『大覺思想』 제2집, 1999, pp.149~170.
- 배상현, 『고려후기사원전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8).
- 사토 미즈오, 『初期佛敎교단과 계율』, 김호성 옮김(서울: 민족사, 1991).
- _____, 『律藏』, 최장식 역(서울: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4).
- 슈마허, E. F., 『佛敎經濟學』, 김정우 역(서울: 대원정사, 1987).
- 신성현, 『初期佛敎교단과 國家와의 관계-율장을 중심으로』, 『佛敎學報』, (서울: 동국대학교 佛敎문화연구원, 1997).
- 오노신조, 『佛敎社會經濟學』, 박경준, 이영근 역(서울: 佛敎시대사, 1992).
- 위자야라트나, 모한, 『比丘尼 승가: 比丘尼 승가의 탄생과 변화』, 온영철 역(서울: 대한佛敎 조계종 교육원, 1998).
- 윤성식, 『初期佛敎의 財政과 會計原則』, 『韓國禪學』, 제16호, 2007. 3., 韓國禪學會, pp. 221~250.
- 이재창, 『高麗寺院經濟의 연구』,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총서 제9집, 1976.
- _____, 『韓國佛敎寺院經濟研究』(서울: 佛敎시대사, 1993).
- 이지관, 『남북진 6부 율장비교연구』(서울: 가산문고, 1996).
- 정각 (2001), 『한국 佛敎 수행자의 새로운 모색: 인식전환을 위한 담론』, 『佛敎평론』, 여름.
- 정기문, 『새 세기에는 새로운 經濟學이 필요한가?』 오사카 상업대학 국제심포지엄, 2000. 11. 4-5.
- 정성본, 『禪佛敎의 노동문제』, 『대각思想』 제2집, 1999, pp.105~143.
- 조병찬, 『佛敎와 經濟理念』, 김용정, 『佛敎와 現代思想』(서울: 동화출판공사,

1982).

-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서울: 민족사, 1998).
- 홍성민, 『禪과 經濟』, 선학회 월례발표회, 2000년 11월 18일, pp.1~26.
- 히라카와 아키라, 『율장연구』, 박용길 역(서울: 토방, 1995).
- 히라카와 아키라, 『比丘戒의 연구 I』, 석혜능 역(서울: 민족사, 2002).
- 히라카와 아키라, 『比丘戒의 연구 II』, 석혜능 역(서울: 민족사, 2004).
- 히라카와 아키라, 『原始佛敎의 연구』, 석혜능 역(서울: 민족사, 2003).
- Abel-Smith, Brian, Kay Titmuss,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4).
- Armitage, Seth, *The Cost of Capital*(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Barucci, Emilio, *Financial Markets Theory*(New York: Springer, 2003).
- Belkaoui, Ahmed, *Accounting Theory*(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1).
- Bloom, Robert and Elgers, Pieter T., *Accounting Theory & Policy*(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1).
- Brigham, Eugene F., *Financial Management*, 3rd ed., (New York: The Dryden Press, 1982).
- Caprio, Jr., Gerard, Atiyas, Izak and Hanson, James A., *Financial Refor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Cencini, Alvaro, *Monetary Theory*(New York: Routledge, 1995).
- Chew, Jr, Donald H., *The New Corporate Finance*(Boston: McGraw-Hill Irwin, 2001).
- Cohn, Theodore H., *Global Political Economy*, 2nd ed., (New York: Longman, 2003).
- Damodaran, Aswath, *Corporate Finance*,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1).
- Evans, Thomas G., *Accounting Theory*,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3).
- Frank J., Fabozzi and Markowitz, Harry M.,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estment Management*(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02).
- Glautier, M W E, B Underdown,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London: Pitman, 1982).
- Haugen, Robert A., *Modern Investment Theory*, 5th ed., (Upper Saddle

- River, N.J.: Prentice Hall, 2001).
- Hendriksen, Eldon S. and Breda, Michael F. Van, *Accounting Theory*, 5th ed., (Burr Ridge, Ill: Irwin, 1992).
- Holmes, Stephen and Sunstein, Cass R., *The Cost of Rights: Why Liberty Depends on Taxes*(New York: W. W. Norton, 1999).
- Kam, Vernon, *Accounting Theory*(Hoboken, N.J.: John Wiley & Sons, 1990).
- Laramie, Anthony J., and Mair, Douglas, *A Dynamic Theory of Taxation*(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0).
- McGee, Robert W., *The Philosophy of Taxation and Public Finance*(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 Milroy, Robert R., and Walden, Robert E.,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0).
- Most, Kenneth S., *Accounting Theory*, 2nd ed., (Columbus, Ohio: Grid Publishing Inc., 1982).
- Paton, William Andrew, *Accounting Theory*(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22).
- Ross, Stephen A., *Neoclassical Fina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Schroeder, Richard G., Clark, Myrtle W., and Cathey, Jack M., *Accounting Theory and Analysis*(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1).
- Stiglitz, Joseph 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 Satha-Anand, Suwanna, *Ethics of Wealth: Buddhist Economics for Peace*, Chanju Mun, ed., Buddhism and Peace: Theory and Practice(Honolulu: Blue Pine, 2006).
- Tresch, Richard W., *Public Finance: A Normative Theory*(Plano, Texas: Business Publications, Inc., 1981).
- Wildavsky, Aaron, *Budgeting and Governing*(New Brunswick, N.J. : Transaction Publishers, 2001).
- Wijayaratna, Mohan, *Buddhist Monastic Lif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Wolk, Harry I., Dodd, James L., and Tearney, Michael G.,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6th ed.,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2004).

Abstract

Buddhist Principles of Finance and Accounting – Focusing on the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Yoon, Sung-Sig

Thoughts on the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in early Buddhism are far more flexible and market friendly compared to socialism and Christianity in that socialism doesn’t allow private property and capital, and Christianity had long been hostile to receiving interests. Buddhism allows financial companies and real estate rental companies, and recommends business diversification, progressive tax system and performance-based allocation. On the contrary to people’s perceptions Buddhism teaches that being rich is a blessing and stability in economic life is indispensable to family and social life. Although Buddhism is quite similar to capitalism of free market economy, it is not the same in every respect. Business maximizes profits in capitalism, however, Buddhism requires that revenues and expenses be balanced in the long-run by way of dana and investment. Although Buddhism pursues flexibility and adaptiveness necessary for sustaining life in market economy today, it could present guidelines for solving problems of conflicts and agony arising from money because of unique Buddhist finance and accounting principles.

• key words

Buddhist Economics, Buddhist Finance, Buddhist Accounting, Buddhist Management,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논문접수일: 2009년 1월 3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20일.
--